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33호 2021. 7. 1.(목)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764호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 1
- 사천시 조례 제1765호 사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조례 ----- 14
- 사천시 조례 제1766호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16
- 사천시 조례 제1767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2
- 사천시 조례 제1768호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4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776호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36
- 사천시 규칙 제777호 사천시 공무원 제안 규칙 ----- 54
- 사천시 규칙 제778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81
- 사천시 규칙 제779호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92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408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 98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179호 시도1호선(LIG사거리~병둔사거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 127
- 사천시 고시 제182호 향촌2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정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129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838호 하천편입토지조서 공고 ----- 145
- 사천시 공고 제843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 ----- 150
- 사천시 공고 제852호 소하천의 점용허가 공고 ----- 151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845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52
- 사천시 공고 제846호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84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사천시 조례 제176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사천시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
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이란 시정에 관심이 있는 시민(다른 지역주민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실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靖)·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4.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상위기관에 추천한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시민은 시의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④ 둘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④ 시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안이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6조(접수 및 처리 상황의 공개 등) 시장은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공모제안의 모집) 시장은 공모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 일자 및 장소(온라인 모집 시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모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모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체우수제안의 평가 및 심사
2. 우수제안으로 채택 여부 및 창안 등급의 구분
3. 표창 및 부상금 지급 결정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4.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은 「사천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천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처리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실질심사가 가능한 접수된 제안의 업무 담당 팀장과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제안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제안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심사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하여 제안자가 제안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실무 심사 후 그 결과를 제안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제안의 심사 및 실시

제11조(제안심사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접수한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또는 경제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 조회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안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사 요청)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제16조(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제안(제19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개선·보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재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제안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표창 및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장 시상 및 보상 등

제17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해당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하나의 제안 당 예산의 범위에서 다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금 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 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동 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 장려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 입 선: 10만원 이하 상품권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3.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성명, 전화번호 또는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표창 및 부상 지급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

⑤ 시장은 시상 후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장을 취소하고 부상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을 상위기관에 자체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18조(보상) 시장은 전시(展示)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험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6장 제안의 사후 관리

제19조(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실시성과의 측정)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 결과를 시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측정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확인·점검) 시장은 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그 확인·점검 결과 제안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제7장 제안의 활성화

제22조(제안의 발굴 노력) ① 시장은 시민이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심사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공감정책(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 매년 생활밀착형 제안의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에서 제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23조(준용) 제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민 제안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이 개정한다.

제3조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1호를 제20호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사천시 조례 제176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 권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청년문화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마련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공간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공간의 사용 등) ① 청년공간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우선한다.

1. 「사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년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사용료를 정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이용자를 제외한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공간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청년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청년공간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창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사천시 조례 제176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 유통시설”이란 사천만 명품 서포 쿨 유통복합공간 시설을
말한다.
2. “판매시설”이란 수산물 유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획하여 판매
장과 음식점 등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
다)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3. “사용재산”이란 사용허가등을 받은 판매시설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용허가등을 받아 판매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수산물 유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 유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수산물 유통시설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2. 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3. 수산물 유통시설의 수익금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산물 유통시설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4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른 수산물 유통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사천만 명품 서포 굴 유통복합공간(1단지):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30-1번지
2. 사천만 명품 서포 굴 유통복합공간(2단지):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30-6번지

제5조(수산물 유통시설의 기능) 수산물 유통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지역특산물)의 유통·판매 등 지역 어촌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2. 어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시설물의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자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와 이용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장 시설의 사용·관리

제7조(사용허가등) ① 시장은 수산물 유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또는 대부료) ① 수산물 유통시설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산출시가 등)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수산물 유통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공과금,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제9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과 조례 및 사용허가등을 받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재산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1개월 이상 휴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휴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용재산의 변경 금지) ①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시장의 승인을 받은 옥외 광고물의 경우 그 설치는 옥외 광고물에 관한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용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옥외 광고물 등의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사용허가등의 취소 또는 해지)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및 제3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등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사용허가등의 취소나 해지를 원할 경우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이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 사용자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원상복구 등)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등의 기간이 끝나거나 제11조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이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사용재산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이 변경된 부분이 사용재산의 유지·관리 등에 장애가 되지 않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②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 책임으로 원상복구한 후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관리 위탁

제13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수산물 유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관리를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의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성과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재산의 관리 등) 수산물 유통시설의 위탁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5조(위탁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관계법령, 조례 등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형사사건 등에 관련되어 위탁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경우

4.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 보칙

제16조(지도·감독) 시장은 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사천시 조례 제176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2021년 7월 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
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를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로, “아니하도록 하여야”를 “않도록 해야”로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축과장, 민원교통과장, 환경보호과장, 보건위생과, 도시과장,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장”을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여성”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사천시 조례 제176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 따른 자연휴양림 이용료 등의 징수와 환급 등에 관한 사항과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휴양림”이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천시 실안동 산170-1번지 일원에 조성한 자연휴양림과 그에 부속된 시설과 시설물 및 자연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숙박시설”이란 자연휴양림 내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데크를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말한다.

3. “이용료”란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입장료”란 자연휴양림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휴양림을 산책·탐방·등산·견학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운영자”란 시장이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위탁 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수탁자”란 자연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기간) 자연휴양림은 연중무휴로 운영하되, 매주 평일에 1일을 휴장한다.

제4조(입장료 및 이용료 등) ①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운영자는 제1항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자연휴양림의 주 출입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참여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등의 비상대피소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사람
 6. 자연휴양림 근무자 숙소로 필요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이용자 중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예약 등) ① 자연휴양림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문자센터에서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숙박시설 이용자는 인터넷 예약시스템인 숲나들e를 활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다만, 예약시스템의 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숙박시설을 예약한 사람은 그 이용료 전액을 예약일의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결제, 인터넷·폰 banking 자동이체 등의 방법으로 지정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예약이 완료된 것으로 보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등)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다.

1.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한 재난과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이용자의 숙박지역 이동이 불가하거나 예약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를 반환한다.
2. 운영자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배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 제외)에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반환하며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한 재난과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는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과 질서의 조성을 위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수칙은 자연휴양림의 주 출입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자연휴양림을 이용하여야 하며, 운영자의 지시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9조(이용 제한 등) ① 운영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이용 제한기간과 그 제한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이용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이나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2. 자연휴양림 내 설치된 각종 시설과 자연물 등을 운영자의 허락없이 이동·반출하거나 파손·훼손하는 경우
3.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4. 고성방가 등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의 행위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6.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주차행위
7. 휴양림 내에서 물품 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경우
8. 그 밖에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③ 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를 자연휴양림에서 퇴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퇴소자가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의해 자연휴양림 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보험 등)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각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관리·운영) 시장은 자연휴양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세입 조치) 운영자는 자연휴양림에서 발생한 수입금을 사천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납부한다.

제13조(규정의 준용) ① 자연휴양림 이용료를 제외한 시설이용료 징수 및 공유재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천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별표 1] <신설 2021. 7. 1.>

자연휴양림 입장료, 이용료 및 이용시기, 이용시간

(제4조제1항 관련)

□ 입장료

구 분	기 준	요금(원)		비 고
		개인	단체	
어 른	1인 1일	1,000	800	· 단체기준 : 20인 이상 · 동절기(12월~2월)는 입장료 면제
청소년·군인	1인 1일	700	500	
어 린 이	1인 1일	400	200	

□ 이용료

구 분			이용인원	이용시간	요 금 (원)		비 고
시설명	명 칭	면 적			비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숙박시설	숲속의 집 (A형, B형)	28.92m ² (원룸형)	2인 (최대 4인)	1동/1일	70,000	100,000	입장료 면제
	숲속의 집 (장애인)	30.42m ² (원룸형)					
	숲속의 집 (C형)	37.83m ² (투룸형)	6인 (최대 8인)	1동/1일	90,000	120,000	
	산림휴양관	69.09m ² (복층형)	10인 (최대 12인)	1동/1일	120,000	170,000	
기타시설	야영데크	16.0m ²	4인	1개소/1일	15,000	20,000	입장료 면제
	야영데크	30.0m ²	6인	1개소/1일	25,000	30,000	

□ 추가요금 부과 기준

- 적정 수용인원 초과 시 : 추가 1인당 10,000원 이용료 추가
- 퇴실시간 초과 시(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 불가)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 숲속의 집 : 시간당 10,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산림휴양관 : 시간당 20,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야영데크 : 시간당 2,000원 이용료 추가, 4시간 초과 시 1일 이용료 추가
-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계산

□ 기타시설 이용료 : 위 시설 외 연중 무료

□ 자연휴양림 이용시기 및 이용시간

- 성수기 : 7월 1일 ~ 8월 31일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 마지막 날
- 주 말 :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의 전 날과 대체공휴일의 전 날
- 숙박시설의 이용시간은 이용일 14:00부터 퇴실일 11:00까지
- 일일 개장(입장)시간은 당일 09:00부터 18:00까지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별표 2] <신설 2021. 7. 1.>

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5조제2항 관련)

감면대상	대상기간	성수기 /주말	비수기 /주중	비고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	20%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야영데크의 이용료에 한함
2.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0%	
3. 국가보훈대상자		-	20%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0%	
5.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		-	20%	
6. 숲사랑지도원		-	20%	
7. 한국숲사랑청년단의 단원		-	20%	
8.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		-	20%	
9. 다문화가족		-	20%	
10. 다자녀가정		-	20%	

※ 비 고

- 이용료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시민 감면인 경우 이용일 현재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1명)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국가보훈대상자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 비속에 한함)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 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
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
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
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
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그 배우자 및 그 유족(직계비속에 한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 보
장 수급자를 말한다.
- 숲사랑지도원이란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 한부모가족 중 지원대상자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 사천시 국내 자매도시 주민이란 예약일 현재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
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
한다.
-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만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별표 3] <신설 2021. 7. 1.>

자연휴양림 이용료 반환 및 배상 기준(제7조제1항제2호 관련)

유 형	배상 및 반환기준	비고
<input type="checkbox"/>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이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이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input type="checkbox"/> 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이용예정 당일 취소	·이용료 전액 반환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10% 배상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20% 배상 ·이용료 전액 반환 및 이용료의 30% 배상	

※ 이용자가 이용당일 이용예정 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취소로 봄.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사천시 규칙 제776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사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① 시민이 「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
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시민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접수증의 교부)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심사 시기)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는 반기별로 하며, 사정에 따라 분기별로 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심사 및 등급 결정)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안심사실무위원회는 제안의 채택 및 불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 제안심사 실무평가서를 제안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제안 불채택 시 생략할 수 있다.

③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심사위원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의 등급을 심사위원의 점수를 총합하여 심사 참가 위원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의 수로 나눈 점수로 결정한다.

④ 심사 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창의성을 평가하여 순위를 정한다.

제6조(제안 등급 및 부상금 지급 기준) ① 제안의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례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입선은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으로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의 등급 외에 해당하는 제안이다.

③ 별표 1에 따른 부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7조(채택제안 실시) 조례 제14조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재심사 요청) 조례 제15조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실시성과의 측정) 조례 제20조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시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조례 제19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별표 1] <신설 2021. 7. 1.>

제안의 등급에 따른 부상(副賞)금 지급 기준(제6조 관련)

제안 등급	부상(副賞)금	비 고
금 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90점 이상
은 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89점 ~ 81점
동 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80점 ~ 71점
장려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70점 ~ 61점
입 선	10만원 이하 상품권	등급 외
불채택 제안	1만원 상품권	1명 최대 6매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별표 2] <신설 2021. 7. 1.>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및 배점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세부심사내용

심사항목	세부심사내용
실시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의 신속한 실시로 정책반영이 가능한가?
창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다른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능률성 또는 경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천시 소속 모든 행정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계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등급	금 상	은 상	동 상	장려상	입 선
점 수	90점 이상	89점 ~ 81점	80점 ~ 71점	70점 ~ 61점	60점 이하 (등급 외)

사 천 시 공 보

제 733 호

심사항목 (배점)		배점기준(총점 100점)				
실시 가능성 (20)		즉시 가능 (20)	1년 이내 (16)	2년 이내 (12)	3년 이내 (8)	
창의성 (20)		획기적인 내용 (20)	다소 독창적 (16)	간단한 아이디어 (12)	기존 제안과 크게 변화 없는 내용 (8)	
능률성 또는 경제성 (30)	능률성 (15)	매우 크다 (15)	다소 크다 (12)	보통이다 (9)	약간 있다 (6)	
	경제성 (15)	3억 원 이상 (15)	2억 원 이상 (12)	1억 원 이상 (9)	5천만 원 이상 (8)	
적용 범위 (15)		전 행정기관 (15)	다수 행정기관 (12)	일부 행정기관 (9)	소속 부서 (6)	
계속성 (15)		10년 이상 (15)	5년 이상 (12)	3년 이상 (9)	1년 이상 (6)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7. 1.>

제 안 서			
제 목			
동일·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제출기관: _____, 제출일시: _____)		
주제안자	성 명	(남/여)	
	생년월일		
	기여도(%)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남/여)		
처리 상황 공개 여부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처리 결과 통보 방식	[<input type="checkbox"/>]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input type="checkbox"/>] 우편	주소:	
<p style="text-align: center;">「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_____년 _____월 _____일</p> <p style="text-align: center;">주제안자 _____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사천시장 귀하</p>			
<p>※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p>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뒤쪽)

① 제 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⑦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작 성 요 령 >

- ① 제안제목: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 ② 제안종류: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 ③ 개요: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 ④ 현황 및 문제점: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 ⑦ 조치사항: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7. 1.>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 안 자	기여도 (%)	업 무 분 담 내 용

공동제안의 부상금은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7. 1.>

<u>제 안 접 수 증</u>			
제 목			
주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기여도(%)
공 동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기여도(%)
세부연락처 (전화번호, 주소 등)			
처리상황 공개여부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p>「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사천시 제안담당자 (서명) (전화번호 :)</p>			

148mm×210mm(일반용지 30g/m²)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1. 7. 1.>

사천시 제안심사위원 평가서

심사위원명 :

(인)

심 사 평 가 서

접수번호

제 목

심사의견

심사기준 및 점수

소계
(100)

실시가능성
(20)

창의성
(20)

능률성 또는
경제성
(30)

적용
범위
(15)

계속성
(15)

- 금 상 (90점 이상)
- 은 상 (89점 ~ 81점)
- 동 상 (80점 ~ 71점)
- 장려상 (70점 ~ 61점)
- 입 선 (60점 이하, 등급 외)

※ 등급 결정 점수는 심사위원 점수를 총합하여 심사참가자 수로 나눈 점수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7. 1.>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7. 1.>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실시부서명 :

제안제목					
제안종류		채택연도			
제안자	성명	주소 또는 소속		직급	
실시자	성명	직급			
실시 성과 평가	최초 실시일자		효과측정 기간		
	측정기간	실시내용	예산절감액	시세·세외 수입 증대액	행정개선효과
	~				
	~				
	~				
	~				
	~				
	~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1. 7. 1.>

재 심 사 요 청 서

수 신 : 사천시장

제안제목					
접수번호		제안종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		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사 요청 사유》					
「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1. 7. 1.>

(앞쪽)

<u>제안관리 기록부</u>					
제안제목					
제안종류			관리번호		
채택연도			제안등급		
제 안 자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전화번호	
공동제안자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 속			직급(직위)	
	기여도(%)			비 고	
실 시 자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기여도(%)			비 고	
제안개요					
시 상 및 보 상	포상종류			인사 특전 부여	종류
	부 상 금			일 자	
제안실시	실시일자			실시근거	
	실시여부	완 전 실 시 ()		일 부 실 시 ()	
		수 정 실 시 ()		실 시 불 가 ()	
실시내용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뒤쪽)

실시성과 평가	측정기간	예 산 절감액	시세·세외 수입증대액	행정개선 효 과
	~			
	~			
	~			
	~			
상 여 금 지 급	예산절감액		시세·세외 수입증대액	
	행정개선 효 과			
	상여금 지급액		지급일자	
권 리 의 승 계	종 류	특 허 ()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자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사천시 규칙 제777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무원 제안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사천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사천시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이란 사천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천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靖)·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시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상위기관에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제3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과정은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정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공무원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안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안의 공동 제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6조(공모제안의 모집) 시장은 공모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 일자 및 장소(온라인 모집 시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모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모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경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사천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체우수제안의 평가 및 심사
2. 우수제안으로 채택 여부 및 창안 등급의 구분
3. 표창 및 부상금 지급 결정
4.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운영은 「사천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천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심사위원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의 등급을 심사위원의 점수를 총합하여 심사 참가 위원의 수로 나눈 점수로 결정한다.

제9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처리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실질심사가 가능한 접수된 제안의 업무 담당 팀장과 업무담당자가 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제안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제안자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심사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하여 제안자가 제안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제안의 채택 및 불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 서식 제안심사 실무평가서를 제안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제안 불채택 시 생략할 수 있다.

제4장 제안의 심사 등

제10조(심사기준 등)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세부심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또는 경제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② 제1항제3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 조회 등)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또는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특허법」·「실용실안법」·「디자인보호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채택제안의 결정 등)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18조에 따른 관리기관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 재심사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제5장 시상 및 부상 등

제13조(인사상 특전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급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1. 부상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2. 공무원 인사상 특전 부여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사상 특전 등을 부여할 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대상으로 한다.

③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제22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 및 별표 1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 및 부상금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해당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하나의 제안 당 예산의 범위에서 다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금 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 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 동 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 장려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 입 선: 10만원 이하 상품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정부 표창 규정」·「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 또는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④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 부상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 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⑥ 시장은 시상 후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상을 취소하고 부상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을 상위기관에 자체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장 채택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 등

제15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제안의 확산)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있다.

제18조(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실시성과의 측정)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측정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확인·점검) 시장은 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제안관리기록부) 시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제18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2조(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채택) 시장은 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제안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심사·채택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제안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제안 규정」(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등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사천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별표 1] <신설 2021. 7. 1.>

제안의 등급에 따른 부상(副賞)금 지급(제13조제1항제1호 관련)

제안 등급	부상(副賞)금	비 고
금 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90점 이상
은 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89점~81점
동 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80점~71점
장려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70점~61점
입 선	10만원 이하 상품권	등급 외
채택 제안 실시 공무원	10만원 이하 상품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불채택 제안	1만원 상품권	1명 최대 6매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별표 2] <신설 2021. 7. 1.>

인사상 특전 부여 기준표(제13조제1항제2호 관련)

제안 등급	인사가점	교육 시간 인정	비고
금 상	0.5	20시간	제안 시행
은 상	0.3	15시간	"
동 상	0.2	10시간	"
장려상	없음	7시간	"
입 선	없음	5시간	"
불채택 제안	없음	2시간	1년 최대 20시간
제안채택 실시 공무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 학습인정 시간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표준안))

※ 제안 등급에 따른 1년 최대 학습시간 인정은 50시간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별표 3] <신설 2021. 7. 1.>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및 배점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세부심사내용

심사항목	세부심사내용
실시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의 신속한 실시로 정책반영이 가능한가?
창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다른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
능률성 또는 경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목적은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예산절감 및 지방재정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적용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천시 소속 모든 행정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
계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

등급	금 상	은 상	동 상	장려상	입 선
점 수	90점 이상	89점 ~ 81점	80점 ~ 71점	70점 ~ 61점	60점 이하 (등급 외)

사 천 시 공 보

제 733 호

심사항목 (배점)		배점기준(총점 100점)				
실시 가능성 (20)		즉시 가능 (20)	1년 이내 (16)	2년 이내 (12)	3년 이내 (8)	
창의성 (20)		획기적인 내용 (20)	다소 독창적 (16)	간단한 아이디어 (12)	기존 제안과 크게 변화 없는 내용 (8)	
능률성 또는 경제성 (30)	능률성 (15)	매우 크다 (15)	다소 크다 (12)	보통이다 (9)	약간 있다 (6)	
	경제성 (15)	3억 원 이상 (15)	2억 원 이상 (12)	1억 원 이상 (9)	5천만 원 이상 (8)	
적용 범위 (15)		전 행정기관 (15)	다수 행정기관 (12)	일부 행정기관 (9)	소속 부서 (6)	
계속성 (15)		10년 이상 (15)	5년 이상 (12)	3년 이상 (9)	1년 이상 (6)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 7. 1.>

제 안 서			
제 목			
동일·유사제안의 다른 기관 제출 여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제출기관: _____, 제출일시: _____)		
주제안자	성 명	(남/여)	
	생년월일		
	기여도(%)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남/여)		
처리 상황 공개 여부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처리 결과 통보 방식	[<input type="checkbox"/>]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input type="checkbox"/>] 우편	주소:	
<p style="text-align: center;">「사천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3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_____년 _____월 _____일</p> <p style="text-align: center;">주제안자 _____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사천시장 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p>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뒤쪽)

① 제 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⑦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작 성 요 령 >

- ① 제안제목: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 ② 제안종류: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 ③ 개요: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 ④ 현황 및 문제점: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해당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 ⑦ 조치사항: 해당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그 밖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 7. 1.>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 안 자	기여도 (%)	업 무 분 담 내 용

공동제안의 부상금은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²)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 7. 1.>

<u>제 안 접 수 증</u>			
제 목			
주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기여도(%)
공 동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기여도(%)
세부연락처 (전화번호, 주소 등)			
처리상황 공개여부	[<input type="checkbox"/>] 공개 [<input type="checkbox"/>]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p>「사천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5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사천시 제안담당자 (서명) (전화번호 :)</p>			

148mm×210mm(일반용지 30g/m²)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1. 7. 1.>

사천시 제안심사 실무평가서 (부서 검토)

제 목	
심사번호	

1. 종합 의견

2.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대상으로

추 천 ()

불추천 ()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제안이 불채택 된 경우에는 제출 불필요

제안서에 대한 심사의견을 별지와 같이 제출함

검토자 업무담당팀장 성명 (서명)

확인자 부 서 장 성명 (서명)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1. 7. 1.>

사천시 제안심사위원 평가서

심사위원명 :

(인)

심 사 평 가 서

접수번호

제 목

심사의견

심사기준 및 점수

소계 (100)	실시가능성 (20)	창의성 (20)	능률성 또는 경제성 (30)	적용 범위 (15)	계속성 (15)

- 금 상 (90점 이상)
- 은 상 (89점 ~ 81점)
- 동 상 (80점 ~ 71점)
- 장려상 (70점 ~ 61점)
- 입 선 (60점 이하, 등급 외)

※ 등급 결정 점수는 심사위원 점수를 총합하여 심사참가자 수로 나눈 점수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1. 7. 1.>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부서	
실시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1. 7. 1.>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

실시부서명 :

제안제목					
제안종류		채택연도			
제안자	성 명	주소 또는 소 속		직 급	
실시자	성 명	직 급			
실시 성과 평가	최초 실시일자		효과측정 기간		
	측정기간	실 시 내 용	예산절감액	시세·세외 수입 증대액	행정개선효과
	~				
	~				
	~				
	~				
	~				
	~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1. 7. 1.>

재심사요청서

수 신 : 사천시장

제안제목					
접수번호		제안종류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명		주소 또는 소속·직급 (직위)			

《재심사 요청 사유》

「사천시 공무원 제안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시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210mm×297mm(보존용지(2중) 70g/m²)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1. 7. 1.>

(앞쪽)

<u>제안관리 기록부</u>					
제안제목					
제안종류			관리번호		
채택연도			제안등급		
제안자	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전화번호	
공동제안자	성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			직급(직위)	
	기여도(%)			비고	
실시자	성명	(남/여)	생년월일		
	소속			직급	
	기여도(%)			비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상	포상종류			인사 특전 부여	종류
	부상금				일자
제안실시	실시일자			실시근거	
	실시여부	완전실시 ()		일부실시 ()	
		수정실시 ()		실시불가 ()	
	실시내용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뒤쪽)

실시성과 평가	측정기간	예산 절감액	시세·세외 수입증대액	행정개선 효과
	~			
	~			
	~			
	~			
상여금 지급	예산절감액		시세·세외 수입증대액	
	행정개선 효과			
	상여금 지급액		지급일자	
권리의 승계	종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자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사천시 규칙 제778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개정 2021. 7. 1.>

사천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렬별		기관별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총합계	본청							
총합계		964	510(3)	17	150	51(1)	26	119	91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933	508(3)	17	121	51(1)	26	119	91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7	4	1	2					
	행정	1	1							
	기술	1			1					
	행정+기술	4	3	1						
	행정+기술+농촌지도관	1			1					
5급	소계	51	26	2	6	3	1	7	6	
	행정	7	5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시설	11	10	1						
	행정+방송통신	1	1							
	농업+농촌지도관	2			2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공업+농업	1							1	
	행정+농업+보건+시설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행정+농업+시설+방송통신	1						1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5급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1		
	행정+공업+보건+시설	1				1				
	행정+농업+녹지+방송 통신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녹지	2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환경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간호	3			3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행정+농업+농촌지도관	1			1					
6급	소계	246	154	3	26	13	6	30	14	
	행정	49	44	2		3				
	세무	2	2							
	사회복지	1	1							
	공업	1				1				
	환경	1	1							
	농업	3			3					
	녹지	1	1							
	해양수산	3	3							
	시설	15	14			1				
	보건진료	2			2					
	행정+세무	13	9					1	3	
	행정+사회복지	19	11			1	1	3	3	
	행정+농업	8	2		1		2	3		
	행정+공업	2	2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6급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3			3					
	행정+시설	26	24	1			1			
	행정+전산	1	1							
	행정+환경	1	1							
	해양수산+환경	1	1							
	보건+간호	5			5					
	공업+시설+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공업+환경	4	2			2				
	행정+공업+시설	9	9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수의+환경	1						1		
	행정+보건+사회복지	1			1					
	행정+녹지+공업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4	4							
	행정+농업+해양수산	2	1					1		
	행정+농업+녹지	7	3					4		
	행정+세무+농업	3						3		
	행정+세무+사회복지	3						2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5	3					2		
	행정+시설+방송통신	2	2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6급	행정+환경+위생	2				2				
	행정+운전+방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4			4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3	2					1		
	행정+사회복지+전산	1							1	
	행정+사회복지+식품위생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세무+농업+보건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3						1	2	
	행정+세무+농업+환경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보건	1							1	
	행정+공업+농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시설+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수의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행정+공업+시설+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1	1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6급	행정+세무+사회복지+ 해양수산	1							1	
7급	소계	259	151	3	40	13	5	27	20	
	행정	55	38	2		2	1	9	3	
	세무	6	5						1	
	사회복지	13	2					8	3	
	공업	1			1					
	농업	1			1					
	녹지	3	3							
	해양수산	3	3							
	보건	4			4					
	의료기술	2			2					
	간호	4			4					
	환경	2	2							
	시설	16	13			2	1			
	수의	2			2					
	보건진료	7			7					
	행정+세무	7	6					1		
	행정+사회복지	11	7			1			3	
	행정+전산	4	3			1				
	행정+농업	5	1		2		1	1		
	행정+공업	2	2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2	1		1					
	행정+시설	28	27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환경	1				1				
	보건+간호	2			2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시설	1				1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7급	농업+녹지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공업+농업	2	2							
	행정+공업+환경	9	7			2				
	행정+공업+시설	7	6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5	4	1						
	행정+농업+녹지	3	2		1					
	행정+세무+농업	2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녹지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8	1				2		5	
	행정+농업+시설	6	3					2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세무+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6			6					
	사회복지+세무+수의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간호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2		
	행정+보건+의료기술+ 간호	1			1					
	행정+공업+시설+해양 수산	1	1							
	행정+공업+보건+시설	1				1				
	운전	4	2		1	1				
8급	소계	229	108	4	41	11	10	26	29	
	행정	53	22	1		1	5	11	13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8급	세무	2	2							
	사회복지	11	4				2	2	3	
	공업	2	1			1				
	농업	1			1					
	녹지	1	1							
	해양수산	3	3							
	보건	1			1					
	의료기술	2			2					
	간호	18			13		1	2	2	
	보건진료	4			4					
	시설	14	13			1				
	행정+세무	9	5					1	3	
	행정+사회복지	13	10			1	1		1	
	행정+사서	1				1				
	행정+전산	4	4							
	행정+속기	1		1						
	행정+농업	4	1		1				2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1			1				
	보건+간호	8			8					
	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시설	20	16			2		1	1	
	행정+해양수산	3	3							
	행정+방재안전	2	2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4	2	2						
	행정+농업+녹지	7	2				1	3	1	
	행정+세무+농업	1						1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8급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3	1					1	1	
	행정+농업+시설	2	2							
	행정+공업+시설	3	3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전산+시설	1	1							
	보건+공업+환경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5			5					
	행정+사회복지+환경+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환경	1							1	
	행정+농업+녹지+ 해양수산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간호	2			2					
	행정+세무+농업+시설	1							1	
	행정+공업+시설+방송 통신	1	1							
	운전	5	2		1	2				
	전기운영	2	2							
9급	소계	140	64(3)	4	6	11(1)	4	29	22	
	행정	29	7(3)			2(1)	1	11	8	
	사회복지	6	3				1		2	
	공업	1	1							
	농업	1			1					
	시설	9	6			1		2		
	세무	2	2							
	보건	1			1					
	환경	1	1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9급	행정+세무	1	1							
	행정+방재안전	3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9	9					8	2	
	행정+농업	3			1		1		1	
	행정+녹지	3	3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10	9					1		
	행정+속기	1		1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환경	1				1				
	공업+환경	1				1				
	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3							3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행정+공업+환경	3	2			1				
	행정+공업+시설	4	4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공업+ 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녹지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시설	4					1	2	1	
	행정+사회복지+보건+ 환경	1							1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9급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2						2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녹지+공업+시설	1	1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속기	1		1						
	운전	5	2	2		1				
	사무운영	5	3			1		1		
	전기운영	1				1				
	방호	3	1			1		1		
지도직 합계		29			29					
지도사	농촌지도사	29			29					
연구직 합계		1	1							
연구사	기록연구사	1	1							
별정직 합계		-	-							
별정6급상당	비서	-	-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사천시 규칙 제779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수산물 유통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7월 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등의 변경)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판매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사용허가등의 변경 신청서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제3조(휴업신청) 사용자는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휴업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원상의 변경) 사용자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원상변경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등의 취소 및 해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취소 또는 해지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사용·수익허가(대부계약) 취소(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 7. 1.>

수산물 유통시설 원상변경 승인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남/여)	생년월일 (법 인 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 용 재 산			
변경하려는 사항	허 가 (계 약) 사 항	변 경 사 항	
변경의 사유			
<p>「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재산의 원상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p> <p>년 월 일</p> <p>신 청 인 (서명 또는 인)</p> <p>사천시장 귀하</p>			
첨 부 서 류	1.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 또는 대부 계약서 1부 2.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 1부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사천시 훈령 제408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7월 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개정 2021. 7. 1.>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 총 괄

직급별 부서별	합계	일 반 직								별정직	정무직	지도직	연구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 계	964	933	1	7	51	246	259	229	140		1	29	1
기획예산담당관	17	17			1	7	7	1	1				
공보감사담당관	15	15			1	7	5	2					
혁신법무담당관	13	13			1	5	4	3					
행 정 과	29	27	1	1	1	10	7	3	4		1		1
주민생활지원과	23	23			1	7	4	6	5				
노인장애인과	18	18			1	6	3	4	4				
여 성 가 족 과	21	21			1	5	6	4	5				
세 무 과	30	30			1	8	10	7	4				
회 계 과	22	22			1	6	6	9					
문 화 체 육 과	19	19		1	1	5	6	3	3				
관 광 진 흥 과	17	17			1	6	5	2	3				
환 경 보 호 과	16	16			1	5	5	3	2				
해 양 수 산 과	24	24			1	7	7	7	2				
민 원 교 통 과	24	24			1	6	8	7	2				
정 보 통 신 과	14	14			1	5	3	3	2				
재 난 안 전 과	23	23		1	1	7	5	5	4				
도 시 과	16	16			1	5	5	4	1				
건 축 과	21	21			1	6	6	6	2				
건 설 과	17	17			1	5	5	4	2				
도 로 과	21	21			1	5	7	4	4				
도 시 재 생 과	17	17			1	5	6	5					
우 주 항 공 과	19	19		1	1	6	6	3	2				
산 업 입 지 과	16	16			1	4	6	3	2				

부서별 직급별	합계	일 반 직								별정직	정무직	지도직	연구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 역 경 제 과	16	16			1	4	6	3	2				
녹 지 공 원 과	21	21			1	6	7	3	4				
토 지 관 리 과	19	19			1	5	5	4	4				
의 회 사 무 국	17	17		1	2	3	3	4	4				
보 건 소	<u>97</u>	<u>97</u>		1	3	19	31	<u>39</u>	4				
농업기술센터	53	24		1	3	7	9	2	2			29	
평생학습센터	13	13			1	4	4	2	2				
환 경 사 업 소	17	17			1	4	4	4	4				
상하수도사업소	21	21			1	5	5	5	5				
신 수 출 장 소	2	2				1	1						
사 천 읍	26	26			1	6	5	10	4				
정 동 면	17	17			1	4	4	3	5				
사 남 면	20	20			1	5	6	4	4				
용 현 면	19	19			1	5	3	6	4				
축 동 면	15	15			1	4	3	4	3				
곤 양 면	16	16			1	4	3	4	4				
곤 명 면	16	16			1	4	4	3	4				
서 포 면	16	16			1	4	4	2	5				
동 서 동	17	17			1	3	2	6	5				
선 구 동	14	14			1	2	3	4	4				
동 서 금 동	13	13			1	2	3	3	4				
별 용 동	19	19			1	3	6	6	3				
향 촌 동	14	14			1	2	3	6	2				
남 양 동	14	14			1	2	3	4	4				

□ 기획예산담당관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7		1	7	7	1	1			
일반직	소 계	17		1	7	7	1	1			
	행 정	11		1	5	4		1			
	행정+시설	1				1					
	행정+세무	2			2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전산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 공보감사담당관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5		1	7	5	2				
일반직	소 계	15		1	7	5	2				
	행 정	6		1	3	1	1				
	시 설	2				1	1				
	행정+시설	2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3			2	1					

□ 혁신법무담당관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3		1	5	4	3				
일반직	소 계	13		1	5	4	3				
	행 정	7			4	2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2		1			1				

□ 행정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연구직	정무직
		총합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29	1	1	1	10	7	3	4	1	1	
일반직	소 계	27	1	1	1	10	7	3	4			
	부이사관	1	1									
	행 정	20		1	1	9	6	1	2			
	행정+전산	2					1		1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1				1						
	운 전	1						1				
	사무운영	1							1			
연구직	소 계	1								1		
	기록연구사	1								1		
정무직	소 계	1									1	
	정 무 직	1									1	

□ 주민생활지원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3		1	7	4	6	5	
일반직	소 계	23		1	7	4	6	5		
	행 정	3			1	1	1			
	사회복지	5			1	1	1	2		
	행정+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14		1	5	2	4	2		

□ 노인장애인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8		1	6	3	4	4	
일반직	소 계	18		1	6	3	4	4		
	행 정	3			1	2				
	사회복지	2				1	1			
	행정+사회복지	10		1	3		2	4		
	행정+공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1			1					

□ 여성가족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1		1	5	6	4	5	
일반직	소 계	21		1	5	6	4	5		
	행 정	6			2	3		1		
	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14		1	3	3	4	3		

□ 세무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30		1	8	10	7	4		
일반직	소 계	30		1	8	10	7	4		
	행 정	4		1	2		1			
	세 무	10			1	5	2	2		
	행정+세무	15			5	5	4	1		
	사무운영	1						1		

□ 회계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2		1	6	6	9			
일반직	소 계	22		1	6	6	9			
	행 정	9		1	1	1	6			
	행정+세무	3			1	1	1			
	행정+공업	3			2	1				
	행정+시설+방송통신	2			2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공업+시설	2				2				
	운 전	2				1	1			

□ 문화체육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9	1	1	5	6	3	3			
일반직	소 계	19	1	1	5	6	3	3			
	행정+기술	1	1								
	행 정	3				2		1			
	행정+시설	6		1	1	2	1	1			
	행정+보건	1				1					
	행정+전산	1					1				
	행정+공업+시설	6			3	1	1	1			
	행정+운전+방호	1			1						

□ 관광진흥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7		1	6	5	2	3			
일반직	소 계	17		1	6	5	2	3			
	행 정	5			3	2					
	시 설	2				1		1			
	행정+시설	8		1	2	2	2	1			
	행정+공업+시설	2			1			1			

□ 환경보호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6		1	5	5	3	2			
일반직	소 계	16		1	5	5	3	2			
	행정	1				1					
	환경	4			1	2		1			
	공업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농업	1			1						
	행정+공업+환경	5			1	2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2		1	1						

□ 해양수산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24		1	7	7	7	2			
일반직	소 계	24		1	7	7	7	2			
	해양수산	9			3	3	3				
	행정+해양수산	7		1		1	3	2			
	행정+시설	1			1						
	해양수산+환경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3			2	1					
	해양수산+환경+시설	3				2	1				

□ 민원교통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4		1	6	8	7	2	
일반직	소 계	24		1	6	8	7	2		
	행정	15			4	5	5	1		
	행정+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7		1	2	2	1	1		

□ 정보통신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4		1	5	3	3	2	
일반직	소 계	14		1	5	3	3	2		
	행정	1			1					
	행정+전산	3			1		2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9			3	3	1	2		

□ 재난안전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3	1	1	7	5	5	4		
일반직	소 계	23	1	1	7	5	5	4		
	행정	1			1					
	행정+기술	1	1							
	행정+시설	6			3	2	1			
	행정+전산	1				1				
	행정+방재안전	6				1	2	3		
	행정+공업+시설	2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3			1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2			1		1			

□ 도시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6		1	5	5	4	1		
일반직	소 계	16		1	5	5	4	1		
	행정	5			2	1	1	1		
	시설	4			2	1	1			
	행정+전산	1				1				
	행정+시설	4		1	1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 건축과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1		1	6	6	6	2		
일반직	소 계	21		1	6	6	6	2		
	행 정	1					1			
	사회복지	1					1			
	시 설	10			2	3	4	1		
	행정+시설	5		1	2	2				
	행정+농업+시설	4			2	1		1		

□ 건설과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7		1	5	5	4	2		
일반직	소 계	17		1	5	5	4	2		
	행 정	3			1	1	1			
	시 설	5			2		2	1		
	행정+시설	3		1	1	1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농업+시설	3			1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사무운영	1							1	

□ 도로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1		1	5	7	4	4		
일 반 직	소 계	21		1	5	7	4	4		
	행 정	1				1				
	시 설	7		1	2	1	2	1		
	행정+시설	3			1	2				
	행정+농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1			1					
	전기운영	2					2			
	방 호	1							1	
운 전	3				1			2		

□ 도시재생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7		1	5	6	5			
일 반 직	소 계	17		1	5	6	5			
	행 정	3				2	1			
	시 설	6			3	2	1			
	행정+시설	7		1	2	2	2			
	행정+농업+녹지	1					1			

□ 우주항공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9	1	1	6	6	3	2		
일반직	소 계	19	1	1	6	6	3	2		
	행정	3			2		1			
	시설	1				1				
	행정+기술	1	1							
	행정+시설	12		1	4	3	2	2		
	행정+공업+환경	2				2				

□ 산업입지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6		1	4	6	3	2		
일반직	소 계	16		1	4	6	3	2		
	행정	2			1	1				
	시설	3			1	1	1			
	행정+시설	8		1	1	3	1	2		
	행정+공업+환경	2				1	1			
	행정+공업+농업+환경	1			1					

□ 지역경제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6		1	4	6	3	2			
일 반 직	소 계	16		1	4	6	3	2			
	행정	2			1	1					
	세무	1			1						
	공업	1						1			
	사회복지	1					1				
	행정+시설	4		1		1	2				
	행정+농업	1				1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공업+환경	3			1	1		1			
	행정+공업+시설+해양수산	2			1	1					

□ 녹지공원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21		1	6	7	3	4			
일 반 직	소 계	21		1	6	7	3	4			
	행정	1					1				
	녹지	5			1	3	1				
	행정+녹지	6			1	2		3			
	행정+녹지+공업	1			1						
	행정+농업+녹지	6			3	2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녹지+공업+시설	1						1			

□ 토지관리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9		1	5	5	4	4		
일 반 직	소 계	19		1	5	5	4	4		
	시 설	7			2	2	1	2		
	행정+시설	10		1	2	3	2	2		
	행정+전산+시설	2			1		1			

□ 의회사무국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7	1	2	3	3	4	4		
일 반 직	소 계	17	1	2	3	3	4	4		
	행 정	6		1	2	2	1			
	행정+기술	1	1							
	행정+시설	2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3				1	2			
	행정+속기	2					1	1		
	속 기	1						1		
	운 전	2						2		

□ 보건소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97	1	3	19	31	39	4			
일 반 직	소 계	97	1	3	19	31	39	4			
	기 술	1	1								
	보 건	6				4	1	1			
	의료기술	4				2	2				
	간 호	17				4	13				
	보건진료	13			2	7	4				
	행정+보건	6			3	1	1	1			
	행정+보건+간호	2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의료기술	3				1	1	1			
	보건+간호	15			5	2	8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행정+보건+사회복지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5			4	6	5				
	행정+사회복지+보건 +간호	2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간호	8		3	2	1	2				
운 전	2				1	1					

□ 농업기술센터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53	1	3	7	9	2	2		29
일 반 직	소 계	24	1	3	7	9	2	2		
	농 업	6			3	1	1	1		
	공 업	1				1				
	수 의	2				2				
	행정+농업	5			1	2	1	1		
	농업+녹지	1				1				
	농업+농촌지도관	2		2						
	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수의	1			1					
	농업+수의+환경	2			1	1				
	행정+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기술+농촌지도관	1	1								
지 도 직	소 계	29								29
	농촌지도사	29								29

□ 평생학습센터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3		1	4	4	2	2		
일반직	소 계	13		1	4	4	2	2		
	행 정	8		1	3	2		2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3			1	1	1			
	행정+사서	1					1			

□ 환경사업소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7		1	4	4	4	4		
일반직	소 계	17		1	4	4	4	4		
	공 업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시설	2					2			
	행정+환경+위생	1			1					
	행정+공업+환경	4			1	2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시설+보건	2		1				1		
운 전	4				1	2	1			

□ 상하수도사업소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1		1	5	5	5	5		
일반직	소 계	21		1	5	5	5	5		
	행 정	1					1			
	시 설	5			1	2	1	1		
	공 업	1					1			
	행정+환경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1				1				
	행정+환경+위생	1				1				
	공업+시설+환경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공업+보건+시설	2		1		1				
	보건+공업+환경	1					1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사무운영	1						1		
	전기운영	1						1		
	방 호	1						1		

□ 신수출장소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			1	1				
일반직	소 계	2			1	1				
	행 정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 사천읍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6		1	6	5	10	4		
일 반 직	소 계	26		1	6	5	10	4		
	행 정	7				1	5	1		
	사회복지	3					2	1		
	시 설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농업	4			2	1		1		
	행정+시설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세무+농업 +보건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시설	2		1				1		
	간 호	1					1			

□ 정동면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7		1	4	4	3	5			
일 반 직	소 계	17		1	4	4	3	5			
	행 정	5				2	1	2			
	사회복지	2				2					
	시 설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보건+시설	1		1							
방 호	1						1				

□ 사남면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20		1	5	6	4	4			
일 반 직	소 계	20		1	5	6	4	4			
	행 정	6				1	3	2			
	사회복지	2				2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사회복지+식품위생	1			1						
	행정+세무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농업+녹지+방송통신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간 호	1						1				

□ 용현면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9		1	5	3	6	4			
일 반 직	소 계	19		1	5	3	6	4			
	행 정	4				1	2	1			
	사회복지	2				1	1				
	시 설	1						1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농업+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농업+시설+방송통신	1		1							
	사무운영	1							1		
간 호	1						1				

□ 축동면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5		1	4	3	4	3			
일 반 직	소 계	15		1	4	3	4	3			
	행 정	4					2	2			
	사회복지	1				1					
	행정+농업	2			2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1		1				
	행정+세무+농업	2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 곤양면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6		1	4	3	4	4		
일 반 직	소 계	16		1	4	3	4	4		
	행 정	5				2	1	2		
	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사회복지+세무+수의	1					1			
	행정+수의+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 곤명면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6		1	4	4	3	4		
일반직	소 계	16		1	4	4	3	4		
	행정	5				2	2	1		
	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수의	1			1					

□ 서포면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6		1	4	4	2	5			
일 반 직	소 계	16		1	4	4	2	5			
	행 정	2				1		1			
	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농업+시설+수의	1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1						1			

□ 동서동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7		1	3	2	6	5			
일 반 직	소 계	17		1	3	2	6	5			
	행 정	6					5	1			
	사회복지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해양수산	2		1				1			
	행정+사회복지+ 해양수산+보건	1			1						
	간 호	1					1				

□ 선구동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4		1	2	3	4	4			
일 반 직	소 계	14		1	2	3	4	4			
	행 정	4					2	2			
	세 무	1				1					
	사회복지	2				1	1				
	행정+세무	2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방송통신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방송통신	2			1			1			

□ 동서금동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3		1	2	3	3	4		
일반직	소 계	13		1	2	3	3	4		
	행 정	4					2	2		
	사회복지	1				1				
	행정+세무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4			1	2		1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	3		1				1	1	

□ 벌용동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9		1	3	6	6	3		
일반직	소 계	19		1	3	6	6	3		
	행 정	4				2	1	1		
	사회복지	2				1	1			
	행정+사회복지	4			2		1	1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세무+녹지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환경	1				1				
	간 호	1						1		

□ 향촌동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4		1	2	3	6	2		
일 반 직	소 계	14		1	2	3	6	2		
	행 정	2					1	1		
	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세무	1					1			
	행정+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전산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공업+농업	2		1					1		

□ 남양동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4		1	2	3	4	4		
일 반 직	소 계	14		1	2	3	4	4		
	행 정	4				1	2	1		
	사회복지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농업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2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1			1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사천시 고시 제2021-179호

시도1호선(LIG사거리~병둔사거리)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1일

사 천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번호	④ 노선명	⑤ 위치	⑥ 면적	⑦ 기점	⑧ 종점	⑨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km)
현구역	시도	1호선	시도 1호선	사남면 죽천리 ~ 사남면 월성리	17,599㎡	사남면 죽천리 19-1	사남면 월성리 98-1	-	0.98km
변경 구역	시도	1호선	시도 1호선	사남면 죽천리 ~ 사남면 월성리	36,568㎡	사남면 죽천리 19-1	사남면 월성리 98-1	-	0.98km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시도1호선(LIG리가아파트 삼거리~병둔사거리) 확·포장공사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고시일로부터 72개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별도첨부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계재 생략(열람장소 비치)

- 사천시청 도로과

6.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내용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부 도로(중로1-14호선))사업
 - 나) 명 칭 : 시도1호선(LIG리가아파트 삼거리~병둔사거리) 확 · 포장공사
 - 3) 면적 또는 규모
 - 가) 중로1-14호선 L=982.0m, B=20.0m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사천시장(도로과)
 - 나) 주 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나)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72개월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토지세목조서 참조

7.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도로과(☎.055-831-33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도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신문용지 54g/㎡)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사천시 고시 제2021-182호

향촌2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정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21-177호(2021. 06. 24.)로 승인 고시한 “향촌2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내용 중 개발기간 오기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21. 07. 01.

사 천 시 장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향촌2 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가. 사천시 관내 해안주변에 산재되어있는 소형 수리조선소 등으로 인하여 도시주거 환경 저해 및 기름 유출로 인하여 해양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소규모 영세 수리조선소 등을 한 장소로 집단화하여 경쟁력 제고
- 나.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환경 보존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 및 향후 사천 바다케이블카 운행 시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함과 동시에 한려수도 해상국립공원 주변 해양환경 보존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가. 위 치: 경상남도 사천시 사등동 산34번지 앞 공유수면 일원
- 나. 면 적: 68,661㎡(산업단지 62,153㎡, 진입도로 6,508㎡)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 방법(변경)

- 가. 개발기간(변경)
 - 당초 2016.07.28. ~ 2021.06.30.
 - 산업단지 2016.07.28. ~ 2021.06.30., 진입도로 2017.08.31. ~ 2021.06.30.
 - 변경 2016.07.28. ~ **2021.12.31.**(오기정정 2021.12.30.→2021.12.31.)
 - 산업단지 2016.07.28. ~ **2021.12.31.**, 진입도로 2017.08.31. ~ **2021. 12.31.**
-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공영개발
- 다. 변경사유: 잔여부대공종 시행 및 준공인가 절차 이행으로 인한 기간 연장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유치업종: 기타 기계 및 장비(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C31)
- ※ 폐수 발생시설 제외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가. 주 소: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나. 사업시행자: 사천시장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가. 지목별 현황 : 공유수면매립 예정지역으로 현재 지목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
- 나. 소유별 현황 : 공유수면매립 예정지역으로 현재 소유권 없음.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68,661.0	-	68,661.0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43,803.0	감523.4	43,279.6	63.8	
공	공 시 설 용 지	23,305.0	증670.7	23,975.7	34.9	
	도	11,150.0	증439.9	11,589.9	16.9	
	로					
	주 차 장	1,615.0	감650.3	964.7	1.4	
	공	1,475.0	증15.7	1,490.7	2.2	
	원					
	완 충 녹 지	70.0	증643.4	713.4	1.0	
	경 관 녹 지	8,995.0	증222.0	9,217.0	13.4	
기	타 시 설 용 지	1,553.0	감147.3	1,405.7	2.1	
	녹지	1,553.0	감147.3	1,405.7	2.1	

나. 기반시설계획

1) 도로

○ 총괄표

구분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1	793	11,150.0	-	-	-	-	-	-	1	793	11,150.0
변경	합계	1	793	11,589.9	-	-	-	-	-	-	1	793	11,589.9
기정	광로	-	-	-	-	-	-	-	-	-	-	-	-
변경	광로	-	-	-	-	-	-	-	-	-	-	-	-
기정	대로	-	-	-	-	-	-	-	-	-	-	-	-
변경	대로	-	-	-	-	-	-	-	-	-	-	-	-
기정	중로	1	793	11,150.0	-	-	-	-	-	-	1	793	11,150.0
변경	중로	1	793	11,589.9	-	-	-	-	-	-	1	793	11,589.9
기정	소로	-	-	-	-	-	-	-	-	-	-	-	-
변경	소로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 도로 결정조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24	14	집산 도로	793	사등동 86-8	향촌2 산업단지내	일반 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변경	중로	3	24	14~15	집산 도로	793	사등동 86-8	향촌2 산업단지내	일반 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경 사유
중로3-24	중로3-24	면적 변경: 11,150→11,589.9㎡	지적측량 결과 반영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22	노외주차장	사등동 일원	1,615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변경	22	노외주차장	사등동 일원	964.7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 용	변경 사유
22	노외주차장	면적 변경 1,615 → 964.7㎡	지적 측량 결과 반영

3) 녹지

○ 녹지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합계		9,065.0		
변경			합계		9,930.4		
기정	2	녹지	경관 녹지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8,995.0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변경	2	녹지	경관 녹지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9,217.0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기정	19	녹지	완충 녹지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70.0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변경	19	녹지	완충 녹지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713.4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 용	변경 사유
2	경관녹지	면적변경 8,995 → 9,217.0㎡	지적 측량 결과 반영
19	완충녹지	면적변경 70 → 713.4㎡	지적 측량 결과 반영

4) 공원

○ 공원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3	공원	소공원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1,475.0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변경	3	공원	소공원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1,490.7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 용	변경 사유
3	소공원	면적변경 1,475→1,490.7㎡	· 지적측량 결과 반영

5) 상수도계획(변경없음)

○ 용수량

구 분	용수 수요량 (㎡/일)	비고
합 계	153	· 용강배수지에서 공급
생 활 용 수	21	
공 업 용 수	132	

6) 오수처리계획(변경없음)

○ 오수량

구 분	오수량(㎡/일)	비고
합 계	134	· 삼천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
공 업 오 수	119	
생 활 오 수	15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7)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 전 력

구 분	전력사용량(MWh/년)	변압기 최대부하(kW)	비 고
합 계	3,020	818	한국전력공사 협의
산업시설용지	2,966	17	
기타시설용지	54	835	

○ 연료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직접열 연료수요량			간접열 연료수요량			비 고
	열수요량 (Gcal/년)	연료수요량(LNG)		열수요량 (Gcal/년)	연료수요량(LNG)		
		천Nm ³ /년	toe/년		천Nm ³ /년	toe/년	
산업시설용지	1,265	121	127	2,055	192	201	
합 계	1,265	121	127	2,055	192	201	

8)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소요회선(회선)	비 고
여유율 20% 감안	23	(주)KT에서 신규 통신시설 공급
합 계	19	
산업시설용지	19	

9)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구 분	폐기물발생량(kg/일)	비 고
합 계	55,138	전량 위탁처리
사업장 배출 폐기물	30,660	
사업장 지정 폐기물	24,478	

9.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총사업비 (27,4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주1)}	기타비용 ^{주2)}
총사업비	27,400	23,600	1,100	1,200	1,500

주1) 감리비 : 공사비, 설계비의 6%

주2) 기타비용 :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의 5%

사 천 시 공 보

제 733 호

나. 연차별 투자계획(변경없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 계	27,400	2,100	6,900	11,000	7,400	-
공 사 비	23,600	1,000	5,700	11,000	5,900	-
설 계 비	설계비	1,100	1,100	-	-	-
	감리비	1,200	-	1,200	-	-
기 타 비 용	1,500	-	-	-	1,500	-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해당없음

11. 에너지 사용계획: 해당없음

12.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도면번호	구 분	계획면적(m ²)		비 율(%)
		기정	변경	
계		43,803.0	43,279.6	100.0
산업1-1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1)	8,155.0	8,671.0	20.0
산업1-2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1)	9,143.0	8,716.2	20.1
산업1-3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1)	10,894.0	10,949.7	25.3
산업1-4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1)	5,112.0	5,107.7	11.8
산업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1)	6,815.0	6,811.6	15.7
산업1-6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1)	3,684.0	3,023.4	7.0

※ 입주예정기업 : 제일조선소, 삼선조선소, 에이치케이조선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적 (m ²)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68,661.0	6,8661.0	100.0	-	
처분대상용지	소 계	43,803.0	4,3279.6	63.0	-
	산업시설용지	43,803.0	4,3279.6	63.0	실수요자 분양
지자체 무상귀속 시설용지	소 계	24,858.0	23,975.7	27.0	
	도 로	11,150.0	11,589.9	16.9	사천시 무상귀속
	주 차 장	1,615.0	964.7	1.4	〃
	공 원	1,475.0	1,490.7	2.2	〃
	완 충 녹 지	70.0	713.4	1.0	〃
	경 관 녹 지	8,995.0	9,217.0	13.4	〃
	녹 지	1,553.0	1,405.7	2.1	〃

사 천 시 공 보

제 733 호

15. 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해당없음

16.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 : 해당없음

1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변경)

I.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도시 지역	계	68,661	100	
	일반공업지역	68,516	99.8	당초 68,375㎡, 99.6%
	자연녹지지역	145	0.2	당초 286㎡, 0.4%

※ 구역계 변경으로 인한 면적 및 구성비 조정

나.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

○ 총괄표

구분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1	793	11,150.0	-	-	-	-	-	-	1	793	11,150.0
변경	합계	1	793	11,589.9	-	-	-	-	-	-	1	793	11,589.9
기정	광로	-	-	-	-	-	-	-	-	-	-	-	-
변경	광로	-	-	-	-	-	-	-	-	-	-	-	-
기정	대로	-	-	-	-	-	-	-	-	-	-	-	-
변경	대로	-	-	-	-	-	-	-	-	-	-	-	-
기정	중로	1	793	11,150.0	-	-	-	-	-	-	1	793	11,150.0
변경	중로	1	793	11,589.9	-	-	-	-	-	-	1	793	11,589.9
기정	소로	-	-	-	-	-	-	-	-	-	-	-	-
변경	소로	-	-	-	-	-	-	-	-	-	-	-	-

○ 도로 결정조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24	14	집산 도로	793	사등동 86-8	향촌2 산업단지내	일반 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변경	중로	3	24	14~15	집산 도로	793	사등동 86-8	향촌2 산업단지내	일반 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3-24	중로3-24	면적 변경: 11,150→11,589.9㎡	지적측량 결과 반영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22	노외주차장	사등동 일원	1,615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변경	22	노외주차장	사등동 일원	964.7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22	노외주차장	면적 변경 1,615 → 964.7㎡	지적 측량 결과 반영

3) 녹지

○ 녹지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합계				9,065.0		
변경	합계				9,930.4		
기정	2	녹지	경관 녹지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8,995.0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변경	2	녹지	경관 녹지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9,217.0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기정	19	녹지	완충 녹지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70.0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변경	19	녹지	완충 녹지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713.4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경관녹지	면적변경 8,995 → 9,217.0㎡	지적 측량 결과 반영
19	완충녹지	면적변경 70 → 713.4㎡	지적 측량 결과 반영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4) 공원

○ 공원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3	공원	소공원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1,475.0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변경	3	공원	소공원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1,490.7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 용	변경 사유
3	소공원	면적변경 1,475→1,490.7㎡	· 지적측량 결과 반영

II.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6	향촌2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천시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68,661	-	68,661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구역계 조정 (면적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 사유
변경	6	사천시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 구역계 조정	· 지적 측량 결과 반영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 733 호

2)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68,661.0	-	68,661.0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43,803.0	감523.4	43,279.6	63.8	
공	공 시 설 용 지	23,305.0	증670.7	23,975.7	34.9	
	도	11,150.0	증439.9	11,589.9	16.9	
	로					
	주	1,615.0	감650.3	964.7	1.4	
	차					
	장					
	공	1,475.0	증15.7	1,490.7	2.2	
	원					
	완	70.0	증643.4	713.4	1.0	
	충					
	녹	8,995.0	증222.0	9,217.0	13.4	
	지					
기	타 시 설 용 지	1,553.0	감147.3	1,405.7	2.1	
	녹	1,553.0	감147.3	1,405.7	2.1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7 - 1 - 나 도시 관리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산업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당초	변경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계		43,803	43,279.6			43,803	43,279.6	
산업	산업1	43,803	43,279.6	1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8,155	8,671.0	
				2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9,143	8,716.2	
				3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10,894	10,949.7	
				4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5,112	5,107.7	
				5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6,815	6,811.6	
				6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3,684	3,023.4	

○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계		1,615	964.7			1,615	964.7	
주	주1	1,615	964.7	-	사등동 산35 일원	1,615	964.7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변경없음)
가)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산업 1-1~ 산업 1-6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공장 부대시설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배 치	• 건축배치지양구간에는 통경축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 배치 지양(권고)	
		높이	최고한도	-
			최저한도	-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 보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강조색 (제한없음) 	
		건축선	• 건축한계선 2m	

나)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	주1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및 사천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전용건물일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고,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 별표1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을 허용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최고한도	-
			최저한도	-
		색 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2m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내용(변경)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사업
- 2) 명 칭 : 향촌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당초 23,305㎡, 변경 23,975.7㎡

구 분		면적 또는 규모		비 고
도 로	중로 3-24호선	기정	L=793m, B=14m, A=11,150㎡	
		변경	L=793m, B=14~15m, A=11,589.9㎡	
주 차 장	주차장 22	기정	A=1,615㎡	
		변경	A=964.7㎡	
공 원	소공원 3	기정	A=1,475㎡	
		변경	A=1,490.7㎡	
녹 지	경관녹지 2	기정	A=8,995㎡	
		변경	A=9,217.0㎡	
	완충녹지 19	기정	A=70㎡	
		변경	A=713.4㎡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사천시장
- 2) 주 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1) 착 수 일 : 2016. 07. 28.
- 2) 준공예정일 ▮ 당초 : 2021. 06. 30.
└ 변경 : 2021.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8호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와 동일함

19. 지형도면고시 도면은 토지e음(<http://www.eum.go.kr>) 에서 열람 가능

※ 게재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향촌2 일반산업단지계획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지침의 목적)

- 본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해 작성되는 향촌2 일반산업단지계획 구역내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형태와 공간활동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침의 적용범위)

- 본 지침은 향촌2 일반산업단지계획구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리)

-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용적률”이라 함은 건축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부 건축물 연면적(동일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3. “허용용도”라 함은 그 필지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4. “불허용도”라 함은 관련법규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필지에는 허용되지 않은 건축용도를 말하며, 지정용도와 불허용도가 중복될 경우 불허용도가 우선적으로 적용 된다.
 5.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되어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6.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7.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8.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의 의장효과를 위하여 사용되는 색깔로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 ② 본 지침에서의 층수의 산정은 건축법상의 규정을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③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2장 산업시설용지

제1조(건축물의 용도)

- 산업시설용지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예시)에 의한다.
- 예시

구분	규제내용
산업시설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공장 부대시설에 한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2조(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적률 이하	최고층수	250%이하	-
건폐율 이하	최저층수	60%이하	-

② 산업시설용지의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250%이하로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가지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없음

제4조(차량의 대지 내 진·출입)

- ① 경관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도의 대지 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③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주차장)

○ 산업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른다.

제3장 기타 기반시설용지

제1조(주차장의 설치)

① 주차장 부지내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법」 및 「사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2조(소공원의 설치)

① 소공원의 공원시설은 전체부지의 20%이하로 설치토록 한다.

② 소공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완충녹지 및 경관녹지의 설치)

①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물의 배치)

○ 기반시설용지 부지에 당해 용도를 위한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는 인접한 대지에 있는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5조(기타 기반시설의 적용)

○ 기타 기반시설용지의 적용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4장 기타사항

제1조(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① 1개 공장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한다.

② 기타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설치방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사천시 조례에 따른다.

제2조(기타)

① 옥상에 설치되는 물탱크 중 기성제품은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제1조(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행하는 모든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건축과 조성 행위에 적용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경절차를 따른다.
- ② 본 지침 시행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사천시 공고 제2021 - 838호

하천편입토지조서 공고

「하천편입토지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하천 하천별 편입토지 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 내용과 관련하여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 7. 1.

사천시장

1. 하천명: 남강(국가하천)
2. 편입토지
 -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전에 토지가 같은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 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토지
 -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로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토지
3. 토지조서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2021. 7. 1. ~ 2021. 7. 15.(15일간)
5. 의견제출처
 - 사천시청 건설과 하천팀(☎055-831-3270)

하 천 편 입 토 지 조 서

하천명 (등급)	편입토지				이용 상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보상금 지급			비고
	위치	지번	지 목	면적	편 입 당 시	청 구 당 시	성명	주소	성 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지 급 일 자	보 상 금 액 (원)	국 유 등 기 일 자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리 정곡리	3-1	하천	165			엄점덕	연평리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리 정곡리	4-1	하천	562			김태원	452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리 정곡리	4-2	하천	202			김태원	452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리 정곡리	4-3	하천	10			김태원	452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리 정곡리	4-4	하천	112			김태원	452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리 정곡리	6-3	하천	298			이점섭	신흥리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리 정곡리	6-4	하천	17			이점섭	신흥리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리 정곡리	68-3	하천	53			최선규	신흥리 388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리 정곡리	71-1	하천	69			박기욱	연평리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리 정곡리	71-2	하천	46			박기욱	주소없음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리 정곡리	74-1	하천	797			정호영	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394-14							사천시 근명면 신흥리 71-1 3/6소유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리 정곡리	74-1	하천	797			정수덕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2가 394-14							사천시 근명면 신흥리 71-1 1/6소유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리 정곡리	74-1	하천	797			정호경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2가 394-14							사천시 근명면 신흥리 71-1 2/6소유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리 정곡리	377-1	하천	307			장현모	경성부 아방정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리 정곡리	380-1	하천	1,091			장현모	경성부 아방정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리 정곡리	382-1	하천	33			장현모	경성부 아방정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리 정곡리	383-1	하천	1,266			황판석	주소없음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리 정곡리	384-5 5	하천	46			상본수강	주소없음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정곡리	387-3	하천	159			사천농지 개량조합	사천읍 수석리 195-1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정곡리	505-1	하천	112			백정흠	부산시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91, 해운대두산위브 포세이돈 102동 1707호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정곡리	506-1	하천	63			박진성	진주부 영정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정곡리	522-1	하천	228			박정영	주소없음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정곡리	524-1	하천	1,266			황판석	453-2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정곡리	525-1	하천	251			한영대	사천군 군명면 정곡리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정곡리	525-2	하천	248			한영대	사천군 군명면 정곡리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정곡리	525-3	하천	63			한영대	사천군 군명면 정곡리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정곡리	526-2	하천	803			문영철	주소없음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정곡리	526-1 0	하천	625			류유무	454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정곡리	527-2	하천	691			이장희	진주부 본정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정곡리	564	하천	76			장현모	경성부 개암리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정곡리	569	하천	595			문영수	사천군 군명 면 정곡리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정곡리	569-1	하천	721			사천농지 개량조합	사천읍 수석리 195-1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정곡리	569-2	하천	175			사천농지 개량조합	사천읍 수석리 195-1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정곡리	569-3	하천	13			문영수	사천군 군명면 정곡리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정곡리	570-1	하천	23			강천총경	진주부 본정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정곡리	570-4	하천	43			강천총경	진주부 본정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정곡리	180-3	하천	241			강대석	진주부 명치정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정곡리	185-2	하천	99			이은현	주소없음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정곡리	185-3	하천	33			이은현	주소없음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정곡리	187-1	하천	60			강길현	주소없음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정곡리	188-1	하천	17			강인석	392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정곡리	189-1	하천	661			강인석	392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 신흥리	194-2	하천	370			김두태	주소없음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 신흥리	194-3	하천	453			김종철	진주시 본성동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 신흥리	194-5	하천	50			김종철	주소없음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 신흥리	194-6	하천	50			김종철	진주시 본성동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 신흥리	196-1	하천	221			강봉권	서포면 무고리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 신흥리	235-2	하천	152			최봉도	진주군 진주읍 남산정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 신흥리	247	하천	823			강지완	김해시 가락로 332번길 13, 102동 804호 (구산동,한라 비발디)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 신흥리	267-1	하천	112			최종철	사천군 근명면 신흥리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 신흥리	422-1	하천	102			이명희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774-16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 신흥리	425-1	하천	192			강만수	522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 신흥리	630-1	하천	235			이한용	주소없음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 신흥리	630-2	하천	26			이한용	주소없음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 신흥리	635-2	하천	443			박상현	485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 신흥리	765-2	하천	311			김한수	진양군 나동면 독산리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 신흥리	769-1	하천	155			정창열	주소없음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 신흥리	769-2	하천	109			정창열	주소없음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 신흥리	780-2	하천	750			황상형	주소없음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 신흥리	848-3	하천	162			이남이	주소없음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 신흥리	892-2	하천	83			문기순	사천군 근명면 신흥리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 신흥리	899-3	하천	301			정동영	주소없음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 신흥리	27-1	하천	1,379			송산무	진주부 행정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 신흥리	27-3	하천	192			송산무	진주부 행정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 신흥리	28-1	하천	327			이규옥	주소없음										
남강 (국가하천)	사천시 근명면 신흥리	28-3	하천	179			이규옥	주소없음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신흥리	32-2	하천	621			정종근	진양군 내동면 귀곡리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신흥리	32-3	하천	1,031			강재신	533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신흥리	33-1	하천	268			이규옥	주소없음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신흥리	50-1	하천	102			이봉석	101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신흥리	51	하천	79			이동식	주소없음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신흥리	243-1	하천	998			박원태	정곡리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신흥리	245-1	하천	317			양병규	17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신흥리	246-1	하천	608			김성택	진양군 명석면 가화리 190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신흥리	247-2	하천	109			정일량	정곡리 17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신흥리	249-1	하천	122			서응갑	신흥리 84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신흥리	249-2	하천	288			이재생	신흥리 84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신흥리	249-4	하천	440			서응갑	신흥리 84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신흥리	249-6	하천	261			이재생	신흥리 84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신흥리	249-9	하천	202			이재생	주소없음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신흥리	262-5	하천	17			정태범	진주시 본정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신흥리	310-1	하천	122			김종호	정곡리 404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신흥리	310-3	하천	79			김종호	정곡리 404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신흥리	311-1	하천	99			이문영	203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신흥리	822-2	하천	7			김재구	하동군 옥종면 송화리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신흥리	822-7	하천	40			김재구	92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신흥리	822-8	하천	10			김재구	892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연평리	5-1	하천	89			손금안	66									
(국가하천)	남강 사천시 연평리	10-1	하천	119			이채하	진양군 내동면 내평리									

- 등 급: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지 목: 편입 당시의 지적공부상 지목을 기재한다.
- 청구 당시의 이용상황: 현재의 이용상황을 기재하되, 하천공사 등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는 인위적 행위 직전의 상태를 ()한
에 추가로 기재한다.

297mm × 210mm [보존용지(1종) 70g/㎡]

사 천 시 공 보

제 733 호

사천시 공고 제 2021 - 843 호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공고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항을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내역

면허 번호	양식업종류 (양식방법)	어장 위치	면적 (ha)	어업 시기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기간	허가일자 및 번호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사천 제30호	어류등양식 (가두리)	서포도 지선	2.0	연중	'16.07.19 ~ '21.07.18	'21.07.19 ~ '26.07.18	'21.06.25. 제2021-3호	사천시 정동면 반룡1로 52, 127동 1004호 (KCC스위첸)	이행수 외 2명 (서기원, 이희천)	

2021년 7월 1일

사 천 시 장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9.8>

소하천의 점용허가 공고

사천시 공고 제2021 - 852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사 천 시 장 (직인)

시행자 (점용·사용 자)	상호 및 명칭	선종숙		
	대표자 (성 명)	선종숙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암동 320-42
소하천명		절골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사천시 사남면 가천리 511번지		
	면적	1.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1.07.1. ~ 2025.06.30.		
	목적 및 사유	배수관로 설치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 및 관련서류 1부(건설과 비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사천시 공고 제2021 - 845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2021.1.12., 시행 2021.4.27., 2021.7.13.)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률 제명 변경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의견 청취에 관한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안 제4조)

나. 공동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정 방법 개정(안 제65조제2항)

- 위원장: 부시장 → 공동위원회 위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부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 공동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

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사항 추가(안 제18조의2)

라.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내 건축 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제외시설 상위법 조문 변경(안 제26조제2호, 안 제27조제3호, 안 제28조제3호, 안 제29조제3호, 안 제30조제3호)

마. 관련 법률 제명 변경(안 제23조제9호, 안 제35조제8호, 안 제38조제1항제9호, 안 제44조제2항제1호)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보전법」
- 「소음·진동 규제법」 → 「소음·진동관리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도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도시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Tel: 831-3166, FAX: 831-6033)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28조제4항”을 “법 제28조제5항”으로, “열람기간동안”을 “열람 기간 동안”으로, “시홈페이지”를 “시 홈페이지”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9호다목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1종사업장 부터”를 “1종사업장부터”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를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 “30m 거리 밖에 있는 대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지”를 “30m(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7조제3호가목 중 “(주거지역 경계에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의 너비는 거리산정에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일반 숙박시설”을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 숙박시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1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한다.

제27조제4호 중 “(주거지역 경계에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의 너비는 거리산정에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한다.

제28조제3호가목 중 “(주거지역 경계에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의 너비는 거리산정에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1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한다.

제28조제4호 중 “(주거지역 경계에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의 너비는 거리산정에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한다.

제29조제3호가목 중 “(주거지역 경계에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의 너비는 거리산정에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1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제29조제4호 중 “(주거지역 경계에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의 너비는 거리산정에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을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한다.

제30조제3호가목 중 “(주거지역 경계에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의 너비는 거리산정에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1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한다.

제30조제4호 중 “(주거지역 경계에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의 너비는 거리산정에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을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한다.

제35조제8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1종사업장 부터”를 “1종사업장부터”로 한다.

제38조제1항제9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1종사업장 부터”를 “1종사업장부터”로 한다.

제44조제2항제1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동 게시판과 시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는 건축물) ①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 7. (생략)

<신설>

제23조(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 4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 8. (생략)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

----- 시홈페이지-----

-----.

제18조의2(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하는 건축물) -----

-----.

- 1. ~ 7. (현행과 같음)
-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 1. ~ 8. (현행과 같음)
- 9. -----

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나. (생략)

다.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생략)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

마. (현행과 같음)

바.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의 2배 이상인 것

10. ~ 17. (생 략)

제26조(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6호 별표 7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 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30m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4. (생 략)

제27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7호 별표 8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2. (생 략)

10. ~ 17. (현행과 같음)

제26조(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

1. (현행과 같음)

2. -----
----- 숙박시설[-----

----- 30m(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
----- 제외한다]

3. 4. (현행과 같음)

제27조(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

1. 2. (현행과 같음)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2. (생략)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주거지역 경계에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의 너비는 거리산정에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거리 밖에

-----.

1. 2. (현행과 같음)

3. -----

-----.

가. -----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

나. -----

----- 10미터(건축물의 각

5. ~ 6. (생략)

제35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 제1항제15호 별표 16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7. (생략)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가공공장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나. (생략)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

5. ~ 6. (현행과 같음)

제35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1. ~ 7. (현행과 같음)

8.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

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
에 해당하는 것

마. (생략)

9. ~ 14. (생략)

제38조(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영 제71
조제1항제18호 별표 19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8. (생략)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7호의 공장(동법 시행령 별
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하
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
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나. (생략)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 제2조제8
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

1종사업장부터 -----

마. (현행과 같음)

9. ~ 14. (현행과 같음)

제38조(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① -----

-----.

1. ~ 8. (현행과 같음)

9.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

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 부터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10. ~ 15. (생 략)

② (생 략)

제44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생 략)

② 영 제7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

1종사업장부터 -----

10. ~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다. (생략)

2. (생략)

제65조(구성) ① (생략)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한다.

③·④ (생략)

가. -----
「물환경보전법」 -----

나.·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6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영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관 련 법 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1. 1. 12.>

1. 제1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 의견을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② 법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 14., 2021. 1. 26.>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할 것

3. 공동위원회의 위원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다.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7]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도축장·도계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8]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별표 9]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0]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11]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사천시 공고 제2021 - 846호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7월 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1.12. 제정(시행 2021.7.13.)됨에 따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 수정 :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3조, 안 제25조, 안 제27조)

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변경
(안 제2장의 제목, 안 제6조)

다.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위촉위원의 제척사유 삭제
(안 제8조제3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225, FAX : 831- 6011)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시”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사천시”로, “보조사업”을 “지방보조사업”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의 제목“(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보조금의”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로 하고, “법령이나 조례”를 “조례”로,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을 “시장은 법 제6조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제2항”으로, “운영비”를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6조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를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일반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위원수”를 “위원 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제3항(중전의 제4항)제2호 중 “위촉직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중 “위촉직인 민간위원”을 “위촉위원”으로, “차례에 한하여”를 “차례만”으로,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6항) 중 “사무 처리를”을 “사무를 처리하기”로, “두되”를 “두며”로, “예산업무담당”을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으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7조)의 제목 “(위원회 기능)”을 “(기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의2제3항”을 “법 제26조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제1항”으로, “위원회”를 “설치한 사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법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사천시의회에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를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로, “위원장이 따로”를 “위원장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2제4항”을 “법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받고자 하는”을 “교부받으려는”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보조신청)”을 “(교부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을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으로, “사항을”을 “각 호의 사항 모두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교부받고자 하는”을 “교부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우에 한함”을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교부받고자 하는”을 “교부받으려는”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교부결정)”을 “(교부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를 “조사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하여 지체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경우에 한함”을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교부조건)”을 “(교부 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 “(교부결정 통지)”를 “(교부 결정 통지)”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교부방법)”을 “(교부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7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23조 중 “기하기 위하여”를 “위하여”로, “때”를 “때에”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성과평가)”를 “(운용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2조의7”을 “법 제27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를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로, “필요성에 대해 제8조에 따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른”을 “필요성을 평가하고”로, “평가”를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9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지방 보조금에 의하여”를 “지방보조금으로”로, “중요 재산에 대하여”를 “중요재산에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승인없”을 “승인 없”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32 조의9제3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 제60조”를 “「지방재정법」 제60조”로,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를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로, “변동 사항”을 “변 동사항”으로 한다.

제29조 중 “제26조제2항제1호”를 “제26조제1항제1호”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 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사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사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 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사천시 지방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사천시----- ----- ---- <u>지방보조사업</u> ---- <u>필요</u>----- -----.</p>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지방보조금”이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p> <p>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p> <p>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p>
<p>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p>	<p>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p>

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시장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3. (생략)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생략)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 조례-----

----- 조례에서 -----
-----.

제4조(보조대상 사업)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

-----.

1. ~ 3. (현행과 같음)
4. -----

--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

----- 지방보

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생략)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조금을 운영비---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삭 제>

② -----

----- 일반직공
무원-----

위원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위원 수-----
-----.

③ -----.

1. (현행과 같음)
2. 위촉위원 -----

--

④ 위촉위원-----
----- 차례만 -----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

⑤ ----- 사무를 처리하기 -----
----- 두며 -----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

제6조(기능)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p><u>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u></p> <p><u>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의 시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u></p> <p><u>4.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u></p> <p><u>5.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u></p> <p><u>6.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u></p> <p><u>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u></p>	<p><u>2.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사천시의회에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u></p> <p><u>3. 그 밖에 시장이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p>② (생략)</p> <p>제8조(회의 등) ①·② (생략)</p> <p><u>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u></p> <p>④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회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④ (현행과 같음)</p>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14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5. 6. (생략)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 9. (생략)

제15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
-- 각 호의 사항 모두를 -----
-----.

1. 2. (현행과 같음)
3. -----
---- 교부받으려는 -----
4. -----
----- 경우에만 해당한다

5. 6.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교부받으려는 -----

5. ~ 9. (현행과 같음)

제15조(교부 결정) -----

----- 조사하여 지체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

1. ~ 3. (생략)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제16조(교부조건) ① (생략)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생략)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6조(교부 조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교부 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교부 방법) -----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3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5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 「지방재정
법」 제17조제2항-----

-----.

제23조(감독 등) -----
----- 위하여 -----
----- 때에 -----

-----.

제25조(운용평가) ① ----- 법 제
27조-----

-----.

②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 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

----- 필요성을 평가하고

--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③·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
-- 법 제21조제1항-----
지방보조금으로 -----
----- 중요재산에
대해서-----

-----.

② ----- 승인 없-----

----- 아니 된다. --- 법 제21조제3항-----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

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시) ① ----- 「지방재정법」 제60조-----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 변동사항-----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제26조제1항제1호-----
----- 대
해석-----
-----.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사 천 시 공 보

제733호

4.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